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5878

발의연월일: 2022. 6. 10.

발 의 자:김태년 · 권칠승 · 김병욱

김영배 • 문정복 • 서동용

송옥주 • 윤영찬 • 이성만

이원욱 • 전혜숙 • 조승래

홍성국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 첫 주택 매입에 한해 취득세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, 공동주택 기준가격 현실화 조치 등으로 혜택이줄어들 우려가 있음. 이에 취득세 경감 기준 주택 가격을 현실화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가구 소득기준을 7천만원에서 미성년 자녀 1인당 1천만원씩 완화하도록 함(안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).
- 나. 감면 기준 주택가격을 수도권은 4억에서 6억으로 지방은 3억에서 5억으로 인상함(안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).

다. 취득세 면제 기준가격을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함(안 제 36조의3제1항 각 호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7천만원 이하인"을 "7천만원(세대 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 1인당 1천만원을 더한다) 이하인"으로, "3억원"을 "5억원"으로, "4억원으로"를 "6억원으로"로 하고, 같은항 제1호 중 "1억 5천만원"을 "2억원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1억 5천만원을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36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36조의3(생애최초 주택 구입에	제36조의3(생애최초 주택 구입에	
대한 취득세 감면) ① 주택 취	대한 취득세 감면) ①	
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		
(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		
법률」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		
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		
배우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		
에서 같다)가 주택(「지방세		
법」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		
주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		
같다)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		
경우로서 합산소득이 <u>7천만원</u>	<u>7천만원(세</u>	
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	대 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 1인	
하는 자가 「지방세법」 제10	당 1천만원을 더한다) 이하인	
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		
(이하 이 조에서 "취득 당시의		
가액"이라 한다)이 <u>3억원</u> (「수	<u>5억원</u>	
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		
에 따른 수도권은 <u>4억원으로</u>	<u>6억원으로</u>	
한다)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		
(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)로 취		
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		
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		

까지	지방세를	감면(이	경우
「지병	상세법」 <i>7</i>	세13조의2의	세
율을	적용하지	아니한다)	한다.
다만,	취득자가	미성년자인] 경
우는	제외한다.		
1 2)	드다기이	기 에 시 1 어	[[ラ]

- 취득 당시의 가액이 <u>1억 5천</u>
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.
- 2. 취득 당시의 가액이 <u>1억 5천</u>
 <u>만원을</u>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
 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
 다.

② ~ ⑥ (생 략)

1 <u>2억원</u>
22억원을
② ~ ⑥ (현행과 같음)